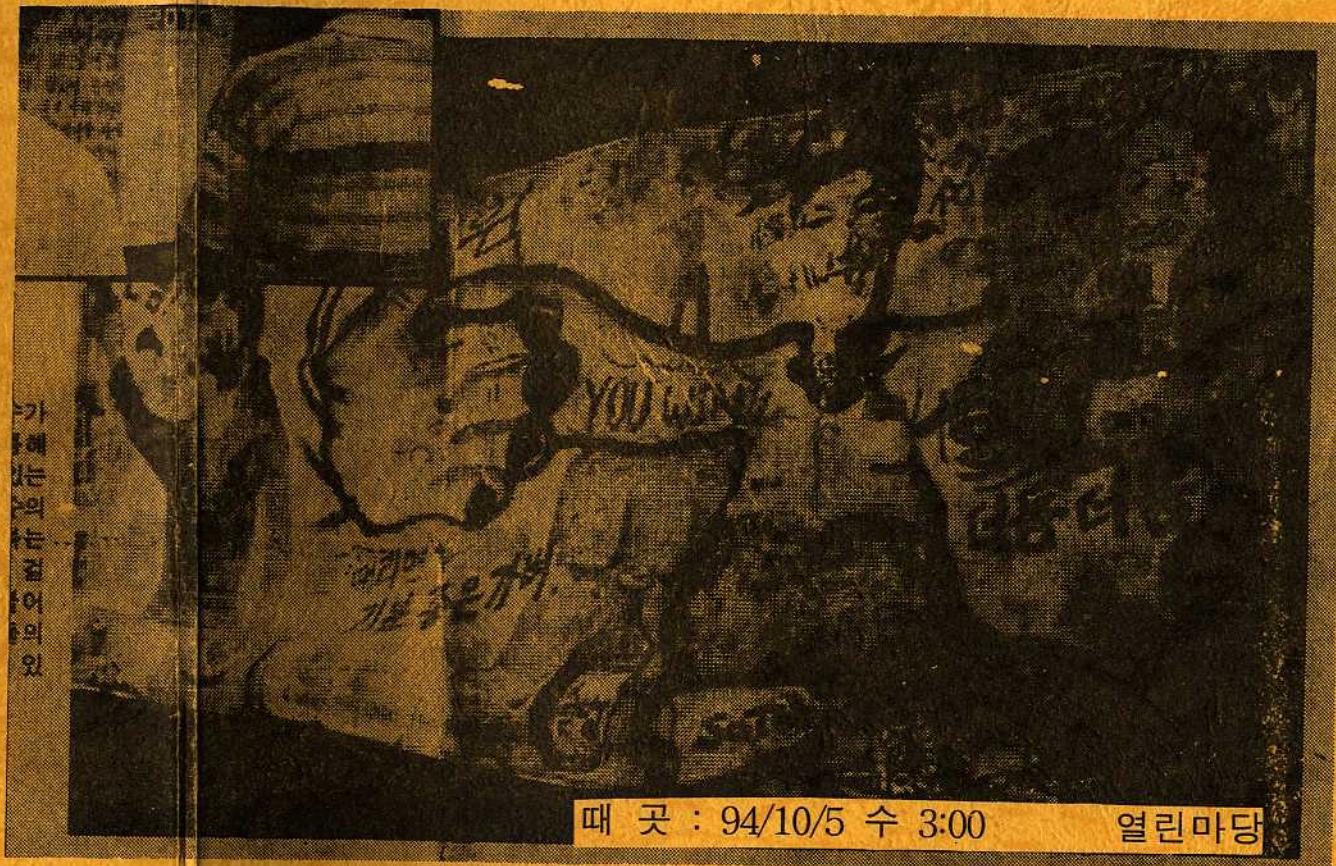


기본판자료

Mc. c. 23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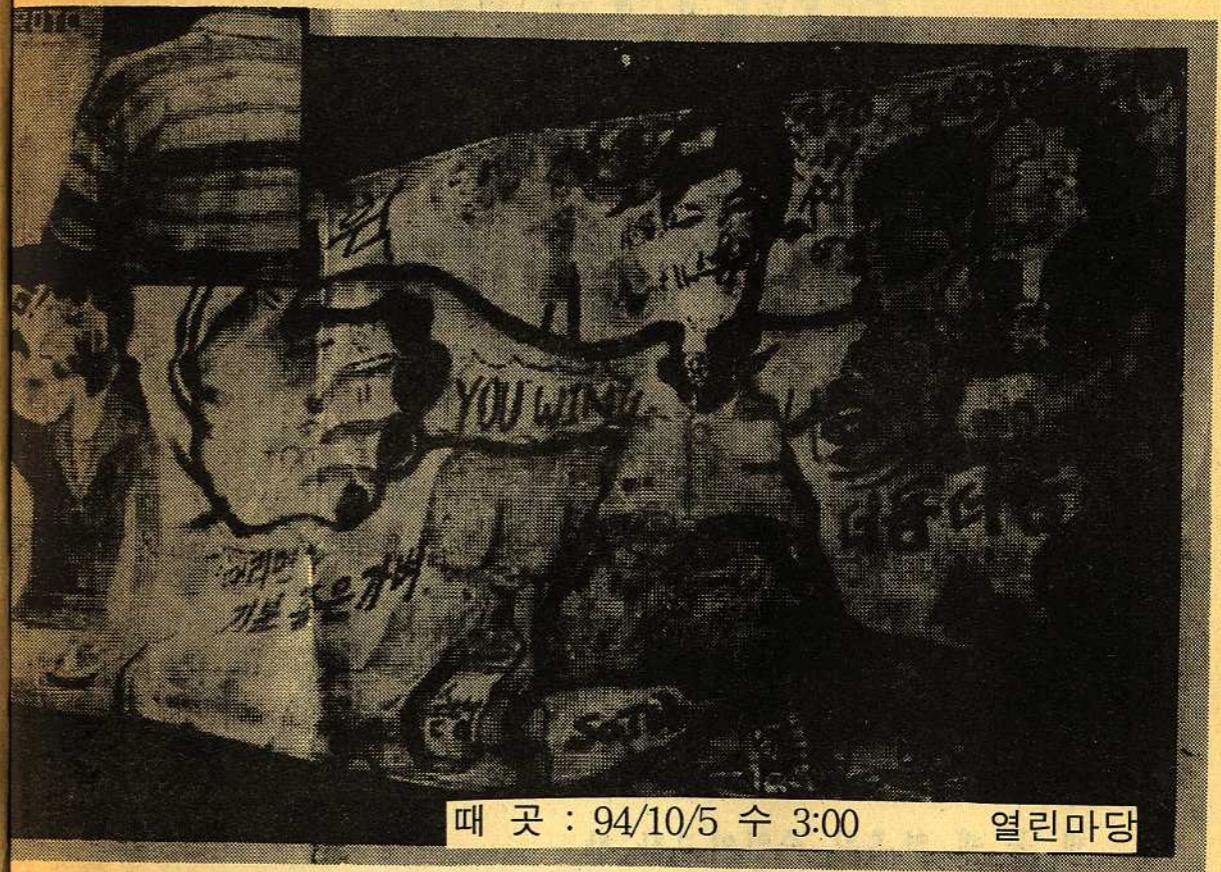
때 곳 : 94/10/5 수 3:00 열린마당

주관 :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
(한울타리, 자연대 어우르기, 인문대 여명,
법대 원을 지우는 사람들)

후원 : 서울대총학생회

학내 성폭력에 관한 공청회

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



때 곳 : 94/10/5 수 3:00 열린마당

주관 :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서울대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
(한울타리, 자연대 어우르기, 인문대 여명,
법대 원을 지우는 사람들)

후원 : 서울대총학생회

이땅의 여성사(女性使)는 기억하리라

장정임(시인)

그녀는 황야에 홀로 외친다
 “내 몸의 주인은 나, 아무나 내 몸에 손대지 마라”
 바람은 울부짖는 그녀의 치마폭을 부풀려
 소름돋은 맨살을 더욱더 희롱하고
 습관처럼 여자를 더듬고 더듬기던 사람들이
 사방에서 찔찔대며 그녀의 인간선언을 비웃는다

그녀는 왜 쫓겨나 바람 속에 서 있는지
 가부장제의 조개무지에 무심히 물혀버린
 가장 오래된 권리 하나 찾아내어
 제 몸 제 영혼의 주인이고자 한
 당연하고 소박한 주장 하나
 그것이 감히 불경스런 그녀의 죄였던가

여자의 몸조차 남자가 주인인

세상의 역사는 너무도 오래고 자연스러워
 세상주인과 맞선 여자의 외마디가
 우스꽝스런 비명처럼 들린다

고양이처럼 엎드린 자아
 애매한 자포자기의 웃음들이여
 그대들은 진정 그대 몸의 권리 위해
 달걀 하나 던져보았는가

그녀는 황야에 홀로 외친다
 바람이 한껏 그녀의 치마를 부풀려
 그녀 맨살을 드러내도
 온몸을 던져 고하는 피투성이의 외침

그대 아프고 설운 날 얼마나 많았으리
 뜻을 가진자 언제나 외로우니
 하늘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내리니
 그대의 자존 그대의 희생 그대의 용기를
 이 땅의 여성사는 길이 길이 기억하리라

공청회를 열며

작년 8월에 한 용감한 여성이 교수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드러내면서 우리 사회에는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제기되었다. 기존의 범죄로 인정되던 강간과 추행에 이어 이제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 언행도 죄로 인정하여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찾는 한 기둥을 마련한 셈이다. 그리하여 그전까지는 그냥 '참고 넘겨야만 했던' 각종 성희롱에 대하여 개념과 대책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게 되었다. 이미 직장내 성희롱의 개념은 널리 알려져 그에 따르는 법적, 제도적 절차를 구비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학내에서 성폭력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되었다. 하지만 학내의 성폭력은 밖으로 알려지지 않고 숨겨진 것이 대부분이며, 또한 이러한 성폭력의 가해자의 처벌이나 피해자의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교 성희롱 사건 서울대 대책위와 여성문제연구동아리협의회는 학내 성폭력의 심각도를 다시 한번 조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내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성폭력의 예방과 그 대책을 마련해 보았다. 이번 공청회는 학내에서 성폭력을 완전히 추방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제, 각종 성폭력을 당했을 때 속으로 화만 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현재의 상황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권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문화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 공청회를 가능하게 해 주신 독어독문학과 김지은 학우와, 설문지를 들고 뛰어다닌 많은 학우들, 설문지에 성의껏 응답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공청회 순서

개회사 전윤정 (조교성희롱사건 서울대대책위 집행위원장)

발제 1. 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사례 김영오 (한울타리)

2. 실태조사결과발표 김수진 (어우르기)

3. 예방과 구제방법 최은아 (자연대부학생회장)

4. '학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규정' 가안 발표
김태선 (원을 지우는 사람들)

질의 응답 및 토론

자료집 순서

서시
공청회를 열며
공청회 순서
이땅의 여성사는 기억하리라 장정임

1부 학내 성폭력 개념과 대책

1. 학내 성폭력 개념과 사례	1쪽
2. 학내 성폭력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언	2쪽
3. '학내성폭력 방지를 위한 규정' 가안	11쪽
	18쪽

2부 서울대 학내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

1. 조사개관	22쪽
2. 문항분석	23쪽
3. 설문지 및 집계	25쪽
	31쪽

3부 참고자료

1.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1심 판결문 요약	39쪽
2.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규정	40쪽
3. 당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이렇게 하세요	42쪽
	44쪽

제1부 학내성폭력의 개념과 대책

1. 학내성폭력의 개념과 사례

2. 학내성폭력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언

3. 가칭 '학내성폭력 방지를 위한 규정'

학내 성폭력의 개념과 사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성폭력 후에도 봉건적인 정조 관념에 의하여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며 복잡한가를 생각해 준다. 강간 따위의 심한 성폭력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일상에서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는 성폭력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작년에 있었던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이라는 것이 은밀한 장소에서 범죄자들에 의해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학교에서 지성의 상징인 교수에 의해서 일어날 정도로 성폭력이라는 질병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성폭력의 형태가 강간이나 추행과 같이 노골적인 방식을 떠지 않더라도 그 형태에 상관없이 여성들에게 큰 괴로움으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에 서울대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여러 성폭력 중에서도 학내에서의 성폭력은 어떤 의미를 지니며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가를 조사하였다.

I. 학내 성폭력의 정의

학교와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 육체적인 행위가

- 1)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2) 그러한 행위에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의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 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를 학내 성폭력이라 정의한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여 개방적인 면학 분위기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의 교육적 소임인바, 성폭력의 근절은 대학으로서는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 공간에서 성폭력이 일어난다는 것은 교육의 기능 자체의 마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리고 사회적 질병인 성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최소의 공간마저 파괴된다는 의미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하겠다. 이런 것들은 학교의 특수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예비 사회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은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의하여 성인보다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안고 살게 된다는 것도 학내 성폭력 문제의 중대성의 하나이다. 학생들은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인만큼 성숙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보다 좋은 교육적 환경이 요구된다.

II.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1. 교수와 제자 관계의 특수성

학교 사회는 그 나름대로 움직여 나가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다. 바로 그 전통적인 방식 때문에 교수들은 그야말로 학생들 위에 군림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것이다. 교수는 학생들의 학점을 관리하고, 학위 수여 여부를 결정하며 학생들의 진로 문제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교수에 의해 주도되는 학업 분위기는 학생들의 학업 능력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교수와 학생의 접촉이 잦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데 학생은 교수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좌우된다. 인맥 위주의 교수 사회의 특성상, 교수에게 잘못 보였을 경우 학계에서는 영원히 발을 못 붙인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대로 정당한 방법이든 그렇지 않은 교수에게 잘 보였을 경우에는 그 학생의 인생은 탄탄대로를 타게 된다.

한 인간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권력과 교수의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독립성을 교수에게 주는 것은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며 기본적으로는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도덕성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과 독립성 때문에 사람들은 교수에게 가장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게 된다.

2. 사제지간 성폭력 문제 해결의 어려움

이러한 교수의 막강한 권력 때문에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렵다. 피해자들은 오히려 설부른 행동이 더 큰 보복을 부를 뿐이라고까지 생각한다. 성폭력의 실패 또는 거부 이후에 학점 문제나 진로 문제가 걸릴 때 피해자는 그야말로 막막해지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졸업만을 기다리면서 그만 참아 넘기려고 하게 된다.

교수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한 예체능계 대학에서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더욱더 심하다. 그래서인지 성폭력도 더욱 많이 일어난다. 91년 스대 사건, 93년 흥여대 사건, 94년 그대 사건이 모두 예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 좋은 증거이다. 그러나 누구의 제자라는 것이 자신의 경력이 되는 예체능계에서 교수에게 항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스대 미대의 김모양은 종강 파티에서 노래방을 갖는데 그 자리에서 교수가 자신의 엉덩이와 목부분을 자꾸만 쓰다듬어 진땀을 뺐다. 그 이후에도 교수가 ‘연구실로 놀러 와라’ ‘너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다’라고 하여 학교 가기가 겁이 난다고 한다. 그러나 장래 문제가 걸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다.

설령 어떻게 사건의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는 학계에서 “배운망덕한 제자”로 낙인찍혀 더 이상 학계에 발붙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의 학자로서의 인생을 포기해야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나서더라도 사건해결에 동참해야할 대학본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행동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 그래서 피해자들도 대학본부에 대한 불신이 높다. 조사에 의하면 성폭력을 당하면 교수나 조교에 호소하겠다는 여학생이 3%, 대학 행정실은 0%로 나타나 여학생들은 교수나 대학당국에 호소해 봤자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작년에 서울대에서 우희정 조교가 대학당국에 진정서를 냈지만 대학본부에서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한 대자보나 플랭카드 등이 걸리면 하루가 멀다 하고 떼어 가기 일쑤였다. 교수들 또한 ‘교권에 대한 도전’, ‘교수의 독립성’을 운운하며 사건 축소에 열을 올렸다. 그리고 올해 그대에서 성폭력 교수 사퇴를 목표로 학생들이 농성에 들어갔을 때도 그대 대학당국은 ‘미미한 문제로 교수의 학자적 생명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일축했다.

그리고 대학 명예의 실추를 걱정하는 대학본부와 일부 학생들의 비뚤어진 애교심으로 인해 ‘일단 덮어두자’는 여론마저 작용하면 학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수와 제자 사이의 성폭력은 문제 제기부터가 어려우며 해결까지 가는 데는 특별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3. 사제지간 성폭력 문제의 중대성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수에게 막강한 권력과 고유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이유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이며 기본적으로는 교수의 학자적 양심과 도덕성을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교수의 도덕성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이다. 우선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으며, 교육을 받기는커녕 자신의 능력을 사장시키게 되는 개개의 학생들이 그 직접적 피해를 입는다. 교수에게 수차례 성적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거나 교수로부터 강간을 당한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학생 개개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제지간의 성폭력이 국가와 사회 전체에 끼치는 영향도 매우 심각하다. 성폭력에 의하여 우수한 인적 자원이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능력을 사장시킨다면 학문적으로 국가적으로 볼 때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산술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상하지만 학생 한 명에 드는 직, 간접적 투자비는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분명한 인적 자원의 낭비일 것이다.

그리고 사회 최고의 지성이고 양심이라 할 수 있는 교수의 비도덕적 행동에 의하여 이 사회의 윤리 도덕도 혼란을 겪을 것이다. 대학 특히 교수라는 신분은 사회의 마지막 양심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선거에서 선생님들이 개표를 많이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가 아닐까? 서울대 성희롱 사건이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유 중의 하나는 사회의 교수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커기 때문도 있다. 사람들은 ‘설마 교수가 그랬을 리가?’ 또는 ‘교수

가 그런 일을 하다니 이제 다 썩었구나’라고 반응을 하였다. 매우 다른 두 반응이 교수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는 같은 내용인 것이다. 이러한 기대의 좌절에서 오는 사람들의 가치관의 상실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수와 제자 사이의 성폭력은 그 심각성과 피해는 매우 크다.

4. 교수와 제자 사이의 성폭력의 유형

- 1) 묵시적 혹은 명시적으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결정 등을 미끼로 성폭력을 하는 경우
- 2) 성폭력에 대한 거부로 학점이나 학위 인정, 논문 통과, 진로 결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 3) 수업실, 연구실, 교수실 등에서의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학업 능력을 방해하거나 거부감을 주는 학업 분위기를 만드는 경우
- 4) 신체 접촉, 데이트 강요, 성적인 모욕을 주는 언동 등 피해자 개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폭력 행위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사회적, 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5. 교수와 제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사례

*사례1-성폭력을 당하고도 항의를 못하는 경우 (94. 7 대 0 과)

나는 1학년 때 시교수와 여러 학생들과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되었다. 시교수가 먼저 자리를 잡고 앉았지만 그 옆에는 서로 앉지 않으려는 선배 언니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시교수 옆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시교수가 어깨에서(목부분에 가까운 어깨) 허리까지 쓸어 내리는 것이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노래방 안이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도 창피해서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볼 수 없었다. 왜 선배님들이 서로 앉지 않으려 했는지도 그때 알게 되었다. 그후 여러 선배들도 그런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3학년이 된 지금까지도 시교수 옆에 가지 않는 것은 우리 전공에서는 보이지 않는 철칙이 되었다.

끝으로 나와 같은 일을 당한 선배님들이나 나 자신도 그런 일을 우리 전임 교수라는 이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다는 자체가 지금은 너무도 부끄러워 진술서를 쓰게 되었음을 밝힌다.

*사례2-서울대는?

우리 서울대 안에도 수많은 교수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우조교 사건 이

후 학생회와 대책위로는 역울함을 호소해오는 사례가 몇 건 있었다. 그 사례들은 어김없이 한 교수가 여러 명의 학생(특히 대학원생)을 장래 보장을 미끼로 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폭력한 경우였고, 그 정도는 강간에까지 이르렀다.

총장에게 낸 진정서, 탄원서는 모두 묵살되었으며 현재 어디 한 곳 호소할 곳이 없이 가슴에 묻어두고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모두 공개시의 불이익 때문에 익명을 요구하여 자세히 밝힐 수 없고 공대위는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III.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생활 환경적인 의미를 많이 지닌다. 어떠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다기보다는 잘못된 성의식에 의하여 일어나는 유형들이다.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은 사회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면에서 일반적인 성폭력의 유형과 대체로 유사하다. 그러나 학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미성년이라는 특성을 지니므로 행위의 발생 원인이나 행위 형태, 그리고 해결책 등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개개인의 특성이나 각 집단의 문화에 따라서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1. 누구에 의해 어디서 행해지고 있나.

1994년 8월 서울대 교수에 의한 조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학내 성폭력에 관한 실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여학생의 83%가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한다. 학내에서 성폭력의 가해자는 선배가 49%, 학교 친구가 44%, 후배가 3% 등으로 아는 사람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도서관이 6%, 식당이 4%, 강의실이 2%, 복도가 3%, 학내 한적한 곳 4%, 셔틀 버스가 4%, 화장실이 1% 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데 비하여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등이 15%, 뒤풀이 장소 39%, MT-야유회 중 19%, 하숙방이 3% 등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체 모임에서 성폭력이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2.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유형

1) 공공 모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에서부터 저질 노래 부르기, 싫어하는데도 강제적으로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는 행위, 성적 접촉의 강요 등이 해당하며 심지

어 MT 등에서의 강간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행위를 하는 이유 중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많았다. 근본적으로는 여학우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다는 생활의 활동소 정도로 여기는 풍토 때문이 아닌가 본다. 비록 그러한 행위가 고의가 아닐지라도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준다는 의미에서 명백한 성폭력이다. 피해자는 인간관계가 소극적이 되거나 심지어 그 과나 동아리, 동문회 등에 다시 안 가는 경우까지 발생한다는 의미에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공공 모임에서의 성폭력은 군사 문화와 밀접히 관련을 맺고 있다. 예전부터 그래 왔기 때문인지 별 생각 없이 그냥 따라 배우는 경우가 많다. 알게 모르게 이성을 대상화하게 되는 의식을 가지게 되고 심지어 성폭력 행위를 집단적으로 전수까지 한다는 것이다. 동문회 같은 경우 이런 일들이 특히 많이 벌어지고 있으며 심지어 신입생들을 창녀촌에 가서 '총각 딱지'를 떼 주는 것을 후배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곳에서도 아직까지 이러한 군사 문화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 科노래 가운데 군대에서 훌러들어 온 저질 노래가 있는가 하면 퇴폐적인 뒤풀이 문화가 선배들의 방조 또는 적극적인 참여 하에 이루어진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신입생 교육의 명목으로 신입생들에게 기합을 준 후 마지막 교육 코스로 여학생이 많은 곳 앞에서 집단적으로 오줌을 누게 하는 등 심각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 모든 문화가 매우 남자답고 호탕한 것으로 둔갑하고 있다. 군사 문화가 많이 남아 있는 곳일수록 성폭력이 많다는 것은 성폭력과 군사 문화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주는 바가 크다.

요즘은 많은 단체들에서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바꾸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학생들을 모임의 활동소 정도로 여기는 모습이라든지 군사 문화의 잔재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각 모임들은 자신들의 모임 문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으며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2) 모르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셔틀 버스, 화장실, 도서관에서의 성적 접촉과 같이 다분히 고의적인 행위로서 음란하고 불쾌한 눈빛, 성기 노출, 음란 전화, 팩스나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음란물 게재 등 모든 종류의 고의적인 성폭력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신의 억눌린 성적 욕구를 다분히 퇴폐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는 것 같다. 일종의 성도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가해자는 사회적 제재와 정신적 치료가 동시에 요구된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의 올바른 성교육이 요구된다.

3) 개인적인 남녀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를 동반하는 데이트 강요 행위나, 연인 사이에서 상대방이

원하지도 않는데 성행위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

남녀 관계에서는 남자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의식이라든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에 바탕하여 일어나며 상대방이 싫어하더라도 육체적 행위를 가지는 것이 애정의 표시라고 생각하거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성폭력인 가의 여부가 어떠한 행위가 있었나 하는 것보다 그 행위가 고의적이든 결과적이든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는가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가로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가해자의 잘못이지만 피해자 쪽의 적극적인 의사 표시도 매우 중요하다. 정말로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고 행하는 가해자도 꽤 많기 때문이다.

3.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사례

*사례1-도서관 2열람실 성추행 사건 (94.5월 서울대에서)

5월 2일 오후 2시쯤 나는 2열람실의 칸막이 있는 책상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런데 옆 자리의 남자가 나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다. 나는 그때 소매 있는 반팔을 입고 있었다. 처음에는 실수로 손이 닿은 줄 알고 팔을 약간 움츠렸을 뿐 그대로 공부를 계속했다. 그런데 계속해서 2-3번 나의 팔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다 들어오다가 나의 어깨를 안으려고 하였다. 내가 다시 몸을 피하였더니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내 엉덩이를 만졌다. 나는 일어나서 학번을 묻고 학생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니 그 사람은 다시 밖으로 나가 버렸다. 나는 그 사람의 책을 챙겨 들고 도서관을 나오면서 그 사람의 자리에 5시에 장터국수에서 만나자고 메모를 남겨 놓았다. 그 이후 나는 총학생회로 가서 상담했고, 5시에 그 사람을 만나 총학생회로 가서 진술서를 받고,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사건을 공개했다.

*사례2-음란가요를 후배들에게 가르친 사건

모 과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어떤 남학생 선배 한 명이 후배들에게 음란가요(속칭 삽신가)를 후배들에게 가르쳤다. 학기 난 신입생 여학생이 전체 뒤풀이 자리에서 과학생회와 그 남학생에게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게 되었다. 이에 학생회에서는 항의를 받아들이고 학생회 차원에서 신입생들에게 사과를 하고 더이상 그런 노래를 부르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 여학생과 학생회가 적극적으로 공동체의 모임 문화를 바꾸어 나간 좋은 사례이다.

*사례3-선배의 데이트 강요 사건

신입생 때의 일이다. 과 선배가 '착하다, 귀엽다'며 나에게 접근해왔다. 혼자 있으면 음료 수도 사주고 점심도 사주며 호의를 보여왔다. 그러던 가운데 선배의 눈치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둘 만의 시간을 갖자며 교제를 요구해왔다. 때로는 불쾌한 표현(언어적)을 하고 신체접촉을 시도해서 왔다. 겹도 나고 해서 피하게 되었는데 뒤에 알고 보니 과 내의 여학우 상당수가 같은 일을 겪었다. 그 가운데 한 친구는 정신적 피해가 커서 당시 일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었다.

*사례4-컴퓨터 음란물을 이용한 성폭력

- 전산실의 누드 사진 PARK 프로그램

전공공부와 레포트 작성 등을 위해 전산실을 이용하는 기회가 많다. 일을 마치고 park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화면에 음란한 그림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완전히 벌거벗은 여자의 모습이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선명하고 세밀하게 화면에 나타난다. 그럴 때마다 민망하면서도 많은 학생이 함께 이용하는 전산실 컴퓨터에 음란프로그램을 설치한 사람에게 분노를 느낀다.

((행위는 포르노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강제적으로 보임으로써 불쾌감을 유발하는 명백한 성폭력 행위이다. 매체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즉 잡히거나 들킬 위험이 없기 때문에) 매체를 이용한 성폭력 행위가 요즘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92년 6월 PC통신에 음란물이 게재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여중생이 자살한 사건도 있었다. 매체는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의 행동이 성폭력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사례 5 - 언어적 성폭력

1학년 때였다. 어느날 저녁 좌석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에 동문선배와 옆자리에 앉아서 집에 가게 되었다. 그 선배는 모임이 있었는지 조금 술은 마신 모양이었다. 몇 가지 일상적인 대화가 오간 뒤 선배는 자신의 연애경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하였다. 곧 애인과의 육체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입을 맞추면 어떻고, 어디를 만지면 어떻고 하는 이야기를 민망할 정도로 자세히 늘어놓았다. 애인과 성관계를 가진 이야기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나에게 "너는 해봤나?" "해보고 싶지 않느냐?" "가르쳐 줄까" 따위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날은 별일 없이 넘어갔지만 그 뒤로 그 선배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게 되었고 다시는 동문회에 나가지 않았다.

사례 6 - 화장실 성추행

** 93년 4월 인문대화장실 사건

93년 4월 경 인문대 3동 2층 여자화장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곳은 헛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놓아야 할 만큼 깁깝하다. 어느 한 여학생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무언가 기분이 이상해 위를 쳐다보니 시커먼 남자의 얼굴이 칸막이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순간 여학생은 소리를 질렀고 그 남자는 급히 도망을 쳤다. 비

명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뛰쳐나와 도망가는 남학생을 잡아 신분을 조사하였다. 그는 경영학과 88학번이라고 밝힌 그 학생은 불일이 급해 남자화장실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어 어찌는 수 없이 잠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뿐 의심받을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학교측은 남학생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고 무마해버렸다.

** 법대도서관화장실 사건

법대도서관 화장실 칸막이는 바닥으로부터 수 cm가량의 공간으로 옆칸과 통해있다. 그런데 그 공간으로 누군가 거울을 집어넣어 옆칸을 엿보는 사건이 몇차례 발생하였다. 학생들은 누구의 소행인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는 학생들의 항의로 엿보지 못하도록 개조를 했을 뿐 그 이상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학내성폭력 예방과 구제를 위한 제언

우조교 사건, 그리고 도서관, 화장실, 강의실 곳곳에서 이어지는 성폭력 사건. 도서관에 대자보가 붙고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든다. 이러저러한 의견이 나오지만 며칠 뒤 대자보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 그만. 또 어디선가 성폭력은 일어난다. 과연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가? 어쩔수 없는가? 학내 성폭력을 막는 장치가 어느 정도 우리 서울대 안에 들어 있는지, 더 확충할 수는 없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1. 교육

가. 실태

1) 제도교육

① 강좌 수가 적고 교육대상이 협소하다

우리학교에 현재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여성학 관련 강좌는 “여성과 사회” “종교와 여성” 두 강좌뿐이다. 두 개의 강좌로 우리학교 학생의 과연 몇 %나 교육할 수 있는지? 그나마 이번 학기 “종교와 여성”은 강사가 없다는 이유로 폐강되었다. 그 밖에 인체생물학, 건강관리, 여성과 건강 등의 강의가 있지만 여기에는 성폭력을 직접 다루지 않고 의학적 성교육을 다른 내용과 함께 가르칠 뿐이다.

② 내용부실 - 비건공자의 주먹구구식수업, 상식이하의 수업내용

더욱 문제인 것은 강의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서울대에는 여성학을 전공한 교수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여성’이 붙은 강의를 ‘여’교수가 가르치고 있을 뿐이다. 잔뜩 기대에 부풀어 들으러갔던 학생들은 ‘현모양처’를 배우고 돌아온다고 한다. 지난해 ‘여성’자가 들어가는 강의에서 담당女교수는 수업시간에 화학과 성희롱사건에 대해 한마디를 하며 “신정휴 교수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다. 인간적으로 이해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 정도 일 가지고 교수의 인생을 망칠수 있느냐” “여론재판, 마녀사냥이다.”는 극언도 서슴지 않아서 강의듣는 학생들과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대 여성학 관련 강좌의 내용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현재 서울대내 학교교육에서는 전혀 기대할 수 없다.

2) 자치교육

제도교육의 보수성과 경직성을 대신하여 올바른 교육을 실현할 대안은 자치교육이다. 그런데 학회-동아리 혹은 학생회의 교육활동이 성폭력예방에 양과 질에서 모두 턱없이 부족

하다는 점은 두말 할 나위 없이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또한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생사회의 문화이다. 실태조사는 학내 성폭력의 대부분이 선배나 친구에 의하여 과(동아리)방, 뒷풀이장소, MT장소에서 일어남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흔히 진실한 인간관계로 끈끈히 묶인 공동체로 여기는 곳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막아내는 방파제 역할을 해야 할 곳에서 많은 성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육에 앞서 학생사회-공동체집단의 문화와 생활방식, 인간관계를 맺는 형태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생각해보건대 세미나와 토론에서 아무리 여성문제를 열띠게 토론해도 술 한잔 걸치고 나면 음담패설-음담가요를 부르고 음란비디오를 보러가고 옆자리에 앉은 여동료의 어깨로 손이 가지 않았던가. 그리고 그 모습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가.

나. 제언

1> 모든 학생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교는 모든 학생과 직원, 교수에게 성폭력 예방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신입생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생에 대해 가장 좋은 방식은 대학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 입학교육이다. 미국 등 외국의 많은 대학들은 신입생오리엔테이션 때 성폭행 예방교육을 실시하는데 이는 피해 방지 차원도 있지만 가해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성폭행에 대한 학교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한다.

② 여성학 전공 교수를 채용하여 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

③ 성폭력예방지침서, 예방포스터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여야 한다.

2> 교육의 내용

① 이성을 완전한 인격체로 볼수 있게 하는 교육

이번 설문조사결과는 성폭력의 원인이 잘못된 성문화와 이성을 대등한 주체로 바라보지 않는 대상적 이성관에 기인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교육은 동료학생이 자신의 성적만족이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과 동일한 인격을 가진 주체임을 명확히 하는 남녀평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성폭력의 원인과 개념, 피해의 심각성

가해자는 호기심이나 호기에서 성폭력을 범하는 경우도 많다.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가 죽는다는 속담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에 가장 잘 들어맞는다. 성폭력과 원인과 개념, 범위, 한계, 피해의 심각성을 안다면 많은 사람이 자신의 언행을 조심할 수 있을 것이다.

③ 자기방어교육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은 완전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에게나 이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자의식을 심어줌과 함께 만약의 경우 자신을 효과적으로 지킬수 있는 간단한 호신술을 교육해야 한다.

④ 강력한 처벌과 제재정책을 널리 일려야 한다

대다수의 학생이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강력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당국은 대학 내 성폭력의 기준과 범위와 이에 대한 징계를 명확히 밝히고 이를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2. 학내 시설

가. 실태

법대도서관 여자화장실 칸막이는 바닥에서 몇 cm가량 떠있어서 그 공간으로 옆칸과 통해 있었는데 그 공간으로 누군가 거울을 통해 옆칸을 엿보는 사건이 자주 벌어졌다. 학생들이 항의하여 고치기는 했지만 그 사건은 법대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는 남녀 학생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지난해 인문대화장실 성추행사건도 칸막이 너머로 옆칸을 넘볼수 있는 구조때문에 생겼다. 또 밤에 귀가하는 여학생에게 학교길은 무섭기만 하다. 뒤따라오는 발소리에 등골이 오싹하고 실제 뒤따라오던 남학생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한다. 지난해 미대 뒷길 강간사건으로 가로등이 많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학교안은 여전히 무서운 곳이고 학내에는 여전히 고쳐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다. 또 학교밖 녹두거리에서는 화장실을 가급적이면 가지않으면 좋다는 것이 상식이다. 여자화장실이 따로 없어 들락날락하다가 술에 취한 남성으로부터 언제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문고리가 아예 없고 벽에는 생각만 해도 무섭기까지한 성적인 내용을 담은 낙서가 가득하다.

나. 제언

1> 실내 복도등, 진입로, 기로등을 더욱 밝게하고 갯수도 늘려야 한다.

2> 야간에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늘려야 한다.

3> 여학생 화장실을 성추행이 불가능하도록 고쳐야 한다.

4> 학내 경비를 강화해야 한다.

5> 녹두거리 상인회와 협의하여 녹두거리 여자화장실을 늘리고 고쳐야 한다.

3. 학내 성폭력 신고-상담기관 설치

가. 실태

· 학교당국은 현재 성폭력 예방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고 있지 않다.

서울대 조교사건을 보더라도 전임조교들이 계속 진정서를 냈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전임자의 진정서 이후 우조교에 이르기까지 신경휴교수가 계속 성희롱을 자행했다는 것을 보아도 학교가 과연 단 한 차례라도 사실을 조사하고 신교수에게 가벼운 경고라도 내렸는지 의심스럽다. 이 사건뿐 아니라 차마 알릴 수 없는 사건들이 여러 교수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만 그들은 총장님의 선처로 '명예롭게' 서울대 교수로 남아있다.

학생 사이에서도 수없이 성희롱이 벌어지고 한 학기에도 몇 건씩 공개되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90년 겨울 사범대도서관 성추행사건에서 가해 학생의 권고휴학도 피해자와 학생회가 교수들을 끈질기게 찾아가 설득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 사건 이외에는 학교가 성폭력에 가시적 조처를 취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다. 가해자를 불러 조사까지 한 경우도 모두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며 넘어가고 말았다.

한마디로 학교는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지키려는 생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없었던 일로 넘어가기를 더 바라고 있다.

· 학생들은 학교를 믿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디에 호소하겠나"는 질문에 교수, 조교나 학교당국에 호소하겠다는 학생은 찾아볼수 없었다. 반면에 학생회 25% 여성단체 21%로 신뢰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학교당국(교수)이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성의식, 성폭력에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성폭력 구제기관은 학생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성폭력구제기관의 구성은 학교당국보다는 보다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할 수 있는 학생대표가 중심이 되고 성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의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성폭력 구제기관의 상설화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학교당국의 강력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학교당국이 가지는 강력한 물적 재정적 시설과 영향력은 학교가 가지는 공식성과 함께 성폭력 제재를 위한 아주 강력한 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제언

학내 성폭력의 예방과 구제를 위하여 가칭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

1> 학생 교수 교직원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학생의 주도적인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구제위에서 학생대표가 중식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부분이 학생이며 피해자의 입장은 강하게 대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구제위원회의 주요역할

- 상설적인 신고창구 마련
- 성폭력 상담
-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
- 피해자 치료 및 보상
-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예방홍보, 교육

3> 서울대의 조건과 현실적 타당성

여러조건을 보았을때 당장에 우리가 원하는 완전한 '구제위' 구성은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에 존재하는 여러 기구와 시설을 슬기롭게 이용한다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① 학내에 신고창구를 설치 : 구제위를 구성하고 그 아래에 신고창구와 조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우조교 사건이나 다른 예들을 보아 학교당국에 접수되는 진정서, 탄원서 가운데 성폭력관련 건은 즉시로 이 조사위에 접수되어 조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 조직과 학생생활연구소 시설이 신뢰성 있는 신고창구로서 역할할 수 있을 것이다.

실태조사에서 신고창구로 학생회실을 여성단체와 함께 높게 신뢰하고 있었다. 따라서 우선은 학생회가 성폭력 구제의 적극적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전문적인 신고-상담을 위해서는 우선은 학생생활연구소를 이용하고 보다 전문적으로는 성폭력상담소와 같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③ 성폭력 전문기관과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의 구제위는 아직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따라서 기존의 성폭력 전문기관의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제위의 일부 역할을 협조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계를 맺어야 할 것이다.

4. 징계와 재교육

가. 실태

... 징계를 가해자는 가장 두려워한다.

학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강화는 신고소 혹은 상담소설치, 성교육강화와 함께 성폭력 방지책으로 매우 높은 지지를 보였다. 그 정도에 있어서도 학생의 경우에는 퇴학과 정학에 대한 지지가 높았고 교직원에 대해서는 더 강한 징계를 원하여 과면이 73%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강한 처벌은 가해자 개인에게 뿐아니라 일반에게도 강력한 억제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많은 사건에서 가해자는 학생 혹은 학교측에 신원이 알려지거나 징계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 아직 학교는 성폭력 가해자 처벌에 인식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폭력으로 학생이든 교수든 징계를 받은 일은 거의 없다. 학교가 아직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 남성중심적 성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이 '혈기왕성한 남성이 실수로 해볼수도 있는 일'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학교는 성폭력을 가능하면 모른체하거나 알게 되더라도 당사자를 불러 몇마디 물어보고는 '이정도면 되었지 않느냐?'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을 생각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며 덮어두는 방향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

... 가해자에는 상습범이 많다는데

그러나 많은 경우 성폭력은 결코 우발적인 충동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한번 시작한 성폭력적인 성적 언행은 무의식중에 혹은 성적 욕구의 만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된다. 실제 우리 공청회 준비모임이 접한 사건 가운데 가해자 조사까지 이루어진 경우 가해자는 어김없이 이전에도 그러한 유형의 성폭력을 자주 행해왔음을 진술했음을 우리는 볼수 있다. 우리가 잘아는 서울대 조교사건, 사범대 도서관사건, 올 5월의 2열람실 사건만 보아도 가해자는 이전에도 성폭력을 행한 경험이 있음이 밝혀졌다. 어떤 경우에는 성폭력혐의로 학교에까지 알려져 조사받고 있던 가해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성폭력을 행해 다시 불려온 경우까지 있었다. 2열람실 사건 가해자는 '공부하기가 싫을 때면 옆자리에 앉은 여성을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풀고 무료함을 달랜다'는 진술을 거리낌 없이 하기도 했다. 이와같이 성폭력 가해자 대부분이 상습범이고 한 사람의 행동이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수 있음을 알기에 학내 성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그러나 학교가 일차적으로는 교육기관이기에 적절한 징계와 함께 재교육은 상당히 중요하다. 학생생활연구소에 반드시 가해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징계가 징계를 위한 징계에 머무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나. 제언

- 1> 학칙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
- 2> 구제위 혹은 피해자에게 징계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 3> 학교는 공식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 4> 학생생활연구소에 가해자를 위한 재교육프로그램을 두어야 한다.

5.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상

가. 실태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주는 충격과 피해는 매우 크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이 불쾌감, 모욕감, 굴욕감, 공포를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이후로 계속되는 후유증은 더욱 심각하다. '가해자의 성에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되었다' '인간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으로 되었다' '과동아리 혹은 그 장소에 나가지 않았다'는 등의 피해자의 생활변화가 나타난 점에 볼때 성폭력은 심하게는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남길수 있다. 학생생활연구소 안에 위와같은 정신적, 생활적 고통을 겪는 피해자를 도울수 있는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피해자가 후유증으로 다시 한번 성폭력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제언

- 1> 학생생활연구소(혹은 의뢰받은 성폭력전문기관)에 피해자 치료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자가 하루빨리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2>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각구성원의 역할

1. 대학당국

- 1> 성폭력의 범위, 구제·제재 조처를 담은 가칭 '학내성폭력 근절을 위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며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 2> 성폭력 예방 홍보와 교육을 널리 실시해야 한다.
- 3> 성폭력상담·신고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2. 학생회

- 1> 성폭력 상담·신고창구를 개설해야 한다.
- 2> 학내성문화 개선활동을 벌여야 한다.
- 3> 여성국 등 여학생의 권리신장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학내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규정(가안)

서문

학문의 이론과 방법을 교수하며 사회의 각 부문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학술연구를 진작함으로써 자아의 실현과 국가의 발전 및 인류의 번영에 기여함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는(서울대학교 학칙 제 1조의 2) 본 대학이, 목표한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롭고 인격적인 면학과 근로의 풍토를 만들어 내야함은 너무도 당연한 교육적 소임이라 할 것이다.

지난해 사회에 크게 파장을 일으킨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은 우리대학이 지금까지 이러한 대학의 소임을 소홀히 함으로써 대학사회내의 곳곳에 아직도 지성과 진리추구의 산실이라는 이름에 부끄러운 오점을 방치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간에 성희롱과 같은 반사회적인 행위가 대학내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묵인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대학이 그의 소임을 방기한 것으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늦은 감이 없지않으나 학내 성폭력의 문제를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규제하고 해결해 나가는 일은 매우 필요하고 또 시급한 일이라 생각된다. 대학이 정책적, 제도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포괄적인 차원에서, 실지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적절한 구제절차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성폭력의 모든 차원의 문제에 대한 대학의 적극적인 정책 표방을 통하여 전 대학사회구성인이 이 문제를 올바른 시각에서 인식하고 이를 판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어나가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식적, 비공식적 절차를 통해 개인의 비밀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면서 올바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이용가능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고, 대학사회구성인이 성폭력을 판별하고 방지, 규제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언론과 가능한 방법으로 대학의 정책을 홍보하며 이것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창안하고 시행하는 일들이 요구된다.

이상의 취지하에서, 이하 외국대학의 학내규정을 참조한 <성폭력방지를 위한 규정>(가안)을 상정한다.

성폭력 방지를 위한 규정(가안)

- [목적] 이 규정은 교수진과 직원, 학생을 포함한 전 대학사회구성인이 자유롭고 인격적인 교육과 근로분위기에서 직업 및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성폭력'을 방지하고 규제하기 위한 구제절차 및 그 담당인과 기관의 조직,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용어의 정의] 성폭력이라 함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과 요구및 기타 성적인 성격을 띤 언어적 물리적 행위가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가르킨다.
 -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개인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 학내 성폭력의 효과적인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하여 대학총장, 학부 및 대학원생 대표, 교직원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내 성폭력 구제위원회' (이하 '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 성폭력 신고접수와 상담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중재 및 사후처리
 - 가해자 징계회부 및 재교육
 - 피해자 보상과 치료
 - 학내 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
 - 위원회는 산하에 신고, 중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 [예방교육] 위원회는 모든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 [피해자의 신고와 신고기구] 2-1), 2), 3)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산하에 상설 신고창구를 설치한다.
 - 대학총장, 학생대표 기구, 교직원대표 기구는 각자, 산하에 성폭력 전담부서를 두고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단 위원회 구성자가 받은 신고내용은 즉시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6. [피해신고와 위원회의 역할] 신고를 받은 위원회는 학칙상 가능한 조처에 관해 신고인과 상담하고 신고인의 요청에 의해 문제의 비공식적인 해결을 돋거나 신고인이 선택한 경우 공식절차로의 이행을 돋는다.

7. [통보금지] 비공식적 해결절차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고인의 동의 없이 피신고인에게 신고인이 취한 조치를 통보하여서는 아니된다.

8. [중재] 비공식적 해결절차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신고인의 의사를 받아들여 화해 및 합의에 의한 해결을 중재할 수 있다.

9. [공식절차로의 이행]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합의에 의한 해결을 보지 못하였거나 신고인이 공식절차의 이용을 선택한 경우 위원회의 공식절차에 회부한다. 공식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서면질술서를 통한 공식절차 이행 신청
- ② 조사위원회의 조사
- ③ 조사결과의 위원회 보고 및 검토
- ④ 필요한 조치의 결정 : 징계건의, 재교육, 보상, 치료 등
- ⑤ ④항 조치의 이행과 감독

10. [서면진술서] 신고인이 공식절차로의 이행을 위해 위원회에 제출하는 서면진술서에는 성폭력의 성격과 가해자, 증인 및 증거자료,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날짜와 시간 및 장소를 기입한다.

11. [조사방식]

- 1) 조사의 목적은 신고된 학칙위반의 사실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근거의 존부를 알기위한 것이므로 이 목적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과 피신고인 및 사실확인에 필요한 사람을 조사한다.
- 2) 조사내용은 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 공개할 수 있고 조사담당자는 비밀준수의무를 진다.

12. [보상 및 치료]

- 1) 위원회는 피해자의 보상 및 치료를 위한 조치를 결정 혹은 건의하고 이를 감독 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산하에 피해자 보상과 치료를 위한 기금을 설치한다.

13. [징계 및 재교육]

- 1) 위원회는 가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징계는 학칙에 따른다.
- 2) 위원회는 가해자에게 재교육을 명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재교육을 실시할 기구를 설치하거나 타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14. [자문기구]

4조의 담당인 및 담당기구, 5조의 상설기구는 성폭력 문제 전문기관을 자문기구로 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기관은 피해자의 치료와 상담, 학내 성폭력 예방교육 및 그 밖의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제2부 서울대 학내 성폭력 실태조사결과

1. 조사개관
2. 문항분석
3. 설문지및 집계

I. 조사개관

1. 조사 목적

사범대 도서관 사건(91), 인문대 화장실 사건(93), 법대 화장실(93), 도서관 2열 사건(94)같이 대자보를 통해 학내에 공개되는 성폭력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개되는 사건들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속에서는 끊임없이 각종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각종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또한 각종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와 학내의 의식변화도 만족할 만한 단계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학내에서는 성폭력을 당하였을 때의 피해자 구제방법도 거의 없어 그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이에 서울대 여성문제동아리협의회에서는 학내에 일어나고 있는 일상적인 성폭력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 학내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칙제정등의 성폭력을 퇴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학내의 많은 잘못들과 모순들을 고쳐나가려고 하는 이 때에, 이 조사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학교공동체를 만들고,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활동들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자료 해석상의 주의점

- (1) 이 자료는 수집 방법상 단과대학별로 층을 나누어 Quota Sampling방법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차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2) 남학생 61명, 여학생 80명, 전체 141명이 조사에 응하였다.
- (3) 각 문항의 퍼센테지는 0.1%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3. 조사 내용

ISSUE	ITEM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결에 대한 의견 ▶ 신교수 퇴진에 대한 의견 ▶ 대학본부의 태도 ▶ 언론의 보도 태도
성폭력의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인 ▶ 심각도
성폭력 대책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징계 정도 ▶ 필요한 조치
성폭력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 ▶ 장소 ▶ 가해자 ▶ 대응 ▶ 피해 ▶ 변화

II. 문항 분석

1. 주요 발견 사항 - (1)

6. 학내 성폭력의 심각 정도

심 각 정 도		남	여	전체
ⓐ	아주 심각하다.	0%	10%	5%
ⓑ	심각하다.	49%	55%	52%
ⓒ	별로 심각하지 않다.	48%	35%	32%
ⓓ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0%	1%

분석

학내 성폭력을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5%, 심각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52%로 전체적으로 57%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49%)보다 여학생(65%)이 학내 성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

5. 학내 성폭력 발생 원인(2개 표시)

원인	남	여	전체
ⓐ 남학생들의 호기심이나 장난기로	25%	23%	24%
ⓑ 친근감의 표시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20%	5%	12%
ⓒ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다는 활력소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35%	50%	43%
ⓓ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72%	83%	78%
ⓔ 정신적 이상이 있는 몇 사람 때문에	10%	4%	6%
ⓕ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3%	24%	15%
ⓖ 피해자의 복장, 말씨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	1%	5%
ⓗ 기타	25%	10%	11%

분석

학내 성폭력의 원인을 살펴 본 결과,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가 성폭력의 가장 큰 원인(78%)이라고 나타났고,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다는 활력소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가 두번째로 큰 원인(43%)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릇된 문화와 시각이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토대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내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성문화의 개선과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여기게 하는 교육, 즉 여성학 교육을 학내에서 넓게 실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겠다.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성폭력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큰 차이가 있었다. 성폭력을 “친근감의 표시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의견은 남학생(20%)보다 여학생(5%)에서 동의율이 훨씬 낮았다.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다는 활력소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라는 의견은 남학생(35%)보다 여학생(50%)사이에서 훨씬 높았다. “정신적 이상이 있는 몇 사람 때문에”라는 의견은 남학생(10%)보다 여학생(4%)가 훨씬 낮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라는 의견은 여학생들 사이에서 원인 3위로 지적될 만큼 높았다. 또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의 원인이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은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 사이에서 높았다.

12.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학내에 필요한 것

	남	여	전체
ⓐ 신고소 혹은 상담소 설치	44%	29%	36%
ⓑ 학칙상의 처벌, 징계의 제정과 강화	18%	34%	28%
ⓒ 성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28%	32%	32%
ⓓ 외부인 출입제한	2%	1%	1%
ⓔ 기타	1%	4%	2%

분석

전체적으로 보아, ‘신고소 혹은 상담소 설치’, ‘성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학칙상의 처벌, 징계의 제정과 강화’가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학내에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학칙상의 처벌, 징계의 제정과 강화’는 남학생(18%)보다 여학생(34%)에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전반적으로 남학생과 여학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시설들이 달랐다.

13. 경험한 성폭력의 유형

유형	비율%
ⓐ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13
ⓑ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았다.	30
ⓒ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였다.	9
ⓓ 음란한(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였다.	2
ⓔ 불쾌하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부딪치는 일을 하였다.	15
ⓕ 당신의 육체, 복장, 사생활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달갑지 않은 언급을 하였다. (잘 빠졌다, 섹시하다, 입술이 매혹적이다, 등)	21
ⓖ 누드, 포르노사진, 그림, 잡지등을 보여주었다.	1
ⓗ 집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원치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였다.	21
ⓘ 강제로 안거나 키스를 하였다.	2
ⓘ 성관계의 유혹을 했다.	2
ⓚ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1
ⓘ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1
ⓜ 눈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갈아입었다.	1

분석

학내에서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성폭력은 성적인 농담, 음담패설등(36%)으로 드러났고, 육체, 복장, 사생활에 대한 성적인 언급과, 원치 않는 데이트강요가 21%로 다음으로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폭력을 100으로 본 퍼센테지이다.

14. 성폭력 발생 장소

장소	비율(%)
ⓐ 도서관	6
ⓑ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15
ⓒ 식당	4
ⓓ 강의실/실험실	2
ⓔ 복도	3
ⓕ 뒷풀이장소	39
ⓖ MT/야유회	19
ⓗ 교수연구실	0
ⓘ 학교내 한적한 곳	4
ⓙ 셔틀버스	4
ⓚ 화장실	1
ⓛ 자취방/하숙방	3
ⓜ 기타	4

분석

성폭력을 경험한 장소는 뒷풀이 장소가 전체 성폭력 발생 장소의 39%, MT/야유회가 19%, 과방등이 15%로 주로 공동체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 가해자

아는 사람	선 배	49%
	학교의 친구	44%
	후 배	3%
	교수/조교	0%
	이성친구	3%
	기타	1%
	모르는 사람	9%

분석

가해자로는 선배, 학교의 친구에 의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번 설문조사로는 교수에 의한 성폭력은 한건도 드러나지 않았다.

2. 주요 발견 사항 - (2)

☞ 4월의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의 1심 판결중 대학본부와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내용에 관하여 질문했을 때,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72%로 높게 나왔다.

1-2.		남	여	전체
ⓐ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75%	70%	72%
ⓑ	대학본부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1%	27%	24%

☞ 범죄사실이 분명한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학내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59%의 찬성율과 29%의 반대율이 나와 반대율도 꽤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가해자, 피해자의 신원과 인권이 보장되면서도 공정하게 해결되는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

☞ 학내 성폭력을 행한 학생의 학사징계 여부는 퇴학이 31%, 정학이 47%로 중징계에 대한 동의율이 78%정도로 높았다. 그에 비해 교수나 교직원의 성폭력의 경우에는 파면이 73%, 정직이 20%로 중징계에 대한 동의율이 93%로 아주 높았다. 학생의 경우보다 교수나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 동의율이 훨씬 높은 이유는 교수나 교직원의 경우는 권위를 남용하여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그 지속성이나 심각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라고 밝혀졌다.

9. 학내 성폭력을 행한 학생의 학사징계 여부, 정도		남	여	전체
ⓐ	퇴학	25%	36%	31%
ⓑ	정학	54%	41%	47%
ⓒ	경고 / 근신	11%	21%	17%
ⓓ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5%	0%	2%

10. 성폭력을 행한 교수/교직원의 징계 여부, 정도	남	여	전체
ⓐ 파면 혹은 해임	69%	76%	73%
ⓑ 정직	23%	18%	20%
ⓒ 감봉	2%	4%	3%
ⓓ 경고	3%	2%	3%
ⓔ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0%	0%	0%

☞ 지금 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디에 호소하겠냐는 질문에 학생회가 25%, 여성단체가 21%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여성단체가 1위(34%), 학생회가 2위(15%)로 나타났다. 한편 행정실에 호소하겠다는 응답은 한명도 없었다. 이것은 조교 성희롱 사건에 대학본부가 전혀 사건 해결에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수수방관만 한 것과 관련이 높다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대학본부가 이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대답은 97%로 아주 높았다.

☞ 성폭력을 경험한 여학생들중 35%의 높은 비율이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고통(가슴이 뛴다, 식은땀, 불면증, 두통, 알레르기, 노이로제)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III. 설문지 및 집계표

남학생 61명, 여학생 80명, 전체 141명에게 물은 설문조사 결과
(남학생응답, 여학생응답, 전체응답의 퍼센테지순으로 쓰여 있다.)

화학과 조교 성희롱 사건에 관한 문항

1-1 우조교의 승소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성희롱을 인정한 진일보한 판결이었다. 95% 91% 92%
- ⓑ 여성계의 압력과 여론에 밀린 불공정한 판결이었다. 5% 9% 8%

1-2 유급조교의 사용자인 대학본부와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사용자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75% 70% 72%
- ⓑ 대학본부와 국가가 함께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21% 27% 24%
- 무응답 4% 3% 4%

2. 신교수의 퇴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책임을 지고 마땅히 퇴진해야 한다. 77% 80% 79%
- ⓑ 교수의 지위와는 무관한 일이므로 신교수 자신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 3% 0% 1%
- ⓒ 항소가 진행중이므로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해야 한다. 15% 11% 13%
- ⓓ 퇴진은 지나친 조처이며 다른 방식의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3% 8% 6%
- 무응답 2% 0% 1%

3. 대학본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제까지의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건해결에 나서야 한다. 97% 90%

93%

- ⓑ 대학본부와 교수는 독립적이므로 대학본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10% 7%

4. 이 사건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선정적이고 흥미거리 위주의 기사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69% 71% 70%

- ⓑ 보수적인 남성중심의 시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28% 22% 24%

- ⓒ 여성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 4% 3%

무응답 2% 3% 3%

성폭력 원인 문항

5. 학내에서 성폭력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 표시)

- (a) 남학생들의 호기심이나 장난기로 25% 23% 24%
- (b) 친근감의 표시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20% 5% 12%
- (c) 여학생을 동등한 학우로 보다는 활력소 정도로 여기기 때문에 35% 50% 43%
- (d) 성의 상품화, 향락, 퇴폐문화가 만연한 잘못된 성문화 때문에 72% 83% 78%
- (e) 정신적 이상이 있는 몇 사람 때문에 10% 4% 6%
- (f)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없기 때문에 3% 24% 15%
- (g) 피해자의 복장, 말씨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 1% 5%
- (h) 기타 25% 10% 11%

6. 학내에서 성폭력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a) 아주 심각하다. 0% 10% 5%
 - (b) 심각하다 49% 55% 52%
 - (c) 별로 심각하지 않다. 48% 32% 32%
 - (d) 아주 심각하지 않다. 2% 0% 1%
- 무응답 1% 3% 2%

성폭력 대책 네방법 문항

7. 범죄사실이 분명한 경우 가해자의 신원을 학내에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 찬성 52% 64% 59%
 - (b) 반대 34% 21% 27%
 - (c) 잘 모르겠다. 12% 15% 13%
- 무응답 2% 0% 1%

8. 학내 성폭력을 형법, 성폭력방지특별법으로 형사처벌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a) 찬성 75% 79% 77%
 - (b) 반대 15% 8% 11%
 - (c) 잘 모르겠다. 8% 13% 11%
- 무응답 2% 0% 1%

9. 학내 성폭력을 행한 학생의 학사징계 여부 정도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a) 퇴학 25% 36% 31%
 - (b) 정학 54% 41% 47%
 - (c) 경고/근신 11% 21% 17%
 - (d)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5% 0% 2%
- 무응답 5% 2% 4%

10. 교수, 혹은 교직원이 성폭력을 행하였을 경우의 조처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a) 파면 혹은 해임 69% 76% 73%
 - (b) 정직 23% 18% 20%
 - (c) 감봉 2% 4% 3%
 - (d) 경고 3% 2% 3%
 - (e)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 0% 0% 0%
- 무응답 3% 0% 1%

11. 지금상황에서 성폭력을 당한다면 어디에 호소하겠습니까?

- (a) 교수 0% 1% 1%
 - (b) 조교 0% 1% 1%
 - (c) 학생회 32% 15% 25%
 - (d) 행정실 0% 0% 0%
 - (e) 친구 혹은 선배 16% 15% 17%
 - (f) 경찰 14% 3% 7%
 - (g) 여성단체 1% 34% 21%
 - (h) 마땅히 호소할 곳이 없다. 21% 21% 21%
- 무응답 16% 0% 7%

12.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학내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a) 신고소 혹은 상담소 설치 44% 29% 36%
 - (b) 학칙상의 처벌, 징계의 제정과 강화 18% 34% 28%
 - (c) 성교육 프로그램의 설치 28% 32% 32%
 - (d) 외부인 출입제한 2% 1% 1%
 - (e) 기타 1% 4% 2%
- 무응답 7% 0% 3%

성폭력 실태 조사

(이하 여학생 응답)

13-1 학교생활을 하는 도중에 불쾌감을 유발하는 성적인, 혹은 성을 암시하는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여학생 숫자)

예 83% 아니오 17%

13-2 유형

- ② 음란하거나 음흉한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13%
- ⑤ 불쾌한 성적인 농담, 폭언, 음담패설 등을 늘어놓았다. 30%
- ⑥ 술자리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힌다든지, 술을 따르게 하였다. 9%
- ⑦ 음란한(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손짓이나 몸짓을 하였다. 2%
- ⑧ 불쾌하게 신체의 일부를 만지거나 의도적으로 부딪치는 일을 하였다. 15%
- ⑨ 당신의 육체, 복장 사생활에 대해 성적인 비유를 하거나 달갑지 않은 언급을 하였다.(잘빠졌다, 섹시하다, 입술이 매혹적이다, 등) 21%
- ⑩ 누드, 포르노사진, 그림, 잡지등을 보여주었다. 1%
- ⑪ 집요하게 또는 강압적으로 원치 않는 데이트나 교제를 강요하였다. 2%
- ⑫ 강제로 안거나 키스를 하였다. 2%
- ⑬ 성관계의 유혹을 했다. 2%
- ⑭ 자신의 성기를 노출했다. 1%
- ⑮ 옷을 입은 채로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 1%
- ⑯ 눈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옷을 갈아입었다. 1%

14. 장소는 어디였습니까?

- ② 도서관 6%
- ④ 과방, 동아리방, 학생회실 15%
- ⑤ 식당 4%
- ⑥ 강의실/실험실 2%
- ⑦ 복도 3%
- ⑧ 뒷풀이장소 39%
- ⑨ MT/야유회 19%
- ⑩ 교수연구실 0%
- ⑪ 학교내 한적한 곳 4%
- ⑫ 셔틀버스 4%
- ⑬ 화장실 1%
- ⑭ 자취방/하숙방 3%
- ⑮ 기타 4%

15. 성폭력의 가해자는 다음 중 누구였습니까?

- ① 아는 사람 91% ② 선배 49% ③ 학교의 친구 44% ④ 후배 3%
- ⑤ 교수 0% ⑥ 이성친구 3% ⑦ 조교 0% ⑧ 기타 1%
- ⑨ 모르는 사람 9%

16. 그 때 귀하는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 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9%
- ③ 자리를 옮기고 계속 그 사람을 피했다. 12%
- ④ 불쾌하다는 표정을 나타냈다. 26%
- ⑤ 문제를 농담으로 일버무리려고 했다. 12%
- ⑥ 오히려 더 진한 농담, 행동을 해버렸다. 7%
- ⑦ 소리를 지르거나 반항했다. 3%
- ⑧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14%
- ⑨ 사과를 요구했다. 19%
- ⑩ 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목격자 등을 확보했다. 3%
- ⑪ 동료들과 대책에 대해 상의했다. 3%
- ⑫ 그 사람과 관계있는 곳에 알렸다. 0%
- ⑬ 과, 단대학생회, 총학생회와 상담했다. 2%
- ⑭ 여성단체등에 상담을 의뢰했다.
- ⑮ 경찰에 알렸다.

19. 그런 일이 있었을 때 귀하의 심정은?

1. 정신적
 - ④ 창피했고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12%
 - ⑤ 위험을 느꼈고 무서웠다. 11%
 - ⑥ 불쾌하고 화가 났다. 62%
 - ⑦ 별로 대수롭지 않았다. 9%
 - ⑧ '나에게 무슨 결함이 있다'고 생각했다. 4%
 - ⑨ 1%
 - ⑩ 0%
 - ⑪ 기타 1%

2. 신체적증상 35% (가슴이 뛴다, 식은 땀, 불면증, 두통, 알레르기, 노이로제 등)

20. 그런 일이 있고 난 후 스스로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a) 가해자의 성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26%
 - (b) 인간관계를 맺는데 소극적으로 되었다. 18%
 - (c) 자신의 삶에 회의를 느꼈다. 6%
 - (d) 과, 동아리 혹은 그 장소에 나가지 않는다. 12%
 - (e) 아예 남자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한다. 6%
 - (f) 성폭력 근절 방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
 - (g) 변화가 없었다. 10%
 - (h) 기타 2%

제3부 참고자료

1.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판결문 (요약)
2. 미국고용기회평등위원회의 규정
3. 당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서울대조교성희롱사건 1심 판결문

I. 원고 피고측 주장

1. 원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련의 행위가 있었는 바 이는 원고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일하기 쉬운 직장에서 일할 권리를 침해하였고, 나아가서 해임으로 직장까지 잃게 하였다.

2. 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정도의 심한 접촉은 없었다. 다소간의 접촉은 있었으나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본의 아닌 접촉이거나 교수-조교사이의 순수한 친밀감의 표시에 지나지 않았다. 또 피고 본인은 기기담당조교의 재임용에 관해 실질적 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다.

II. 사실인정

1. 사실인정의 어려움

이것은 원고와 피고 신교수 두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이므로 제 3자가 알기 어렵다. 또 어떠한 행위가 있었으나 없었느냐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어떠한 의미에서 그러한 행위가 있었느냐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어서 상당히 고민하였다.

2. 인용증거의 문제

1) 원고 본인 신문결과 진술서 등

본인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신뢰성이 문제이다. 시간이 흐른 후의 진술은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조작할 수도 있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도 자기최면에 걸려서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구체적으로 되는 수도 많다. 그래서 민사소송법도 본인의 진술은 보충적인 증거방법에 불과한 것으로 하였다.

2) 증인 柳모씨(원고측)의 진술

우니나라 현실에서 스승을 배신하는 제자가 발불일 곳은 아무 학교도 없으리라는 것은 오히려 맞으리라 보고 그럼에도 지도교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가 있다고 본다.

3) 증인 蔡모씨(피고측)의 진술

피고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며 원고의 재임용 탈락은 원고의 독단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도 피고가 남녀노소의 아무앞에서나 성에 관한 농담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피고의 평소 성행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 증인 ○모씨(원고측)의 진술

○씨는 처음에 피고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일을 하였다는 진정서를 원고측에 만들어

주었다. 「단둘이만의 식사제의, 기기사용 교육시 포옹자세, 산책제의, 남한산성 가면서의 신체적 접촉, 휴가기간의 동반여행 제의, 그 거절 후의 태도변화 및 출근 중지지시」

3. 인정한 사실

1) 신체적 접촉행위 = NMR기기교육과정에서의 포옹하는 듯한 자세 20~30회, 어깨에 손을 올려 놓거나 등을 쓰다듬기-손잡기(원고가 명시적은 아니나 고개 숙이거나 몸을 빼서 저항), 실험실에서 땅은 머리 만지작거림

2) 무형적 폭력

심부름으로 연구실에 들어오는 원고를 아래위로 훑어보았다. 둘만의 입방식 제의, 산책제의, 「연구실에서 옷갈아입어라」요구-원고「싫어요」라고 거부.

3) 원고거절 후의 피고의 보복적 태도

원고업무보고 등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임, 원고업무수행에 쓸데없는 트집을 잡음, 원고책상을 실험실에서 기기실로 옮겨 혼자 근무토록 함

4) 실질적인 해임(재임용 거부)

선임절차상 기기담당교수인 피고가 사실상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교수가 추천안하면 임용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의 시료측정지연, 공무불성실, 대인관계 불원만 등을 재임용거부 이유로 드나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볼때 진정한 이유는 성희롱의 보복으로 보인다.

III. 법률적 책임

직장내에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인사권을 가지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임면, 직장내에서의 지위, 근로조건 결정에 적극적 소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그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다음의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의 범주에 든다.

① 직장-작업현장, 기타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성과 관련된 언동을 하여 상대방이 불쾌감-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주위사람들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② 성적 접근에 응하기를 요구하거나 불쾌한 성적 접근 기타 성적인 성격을 갖는 언동을 하며, 이에 대한 복종-거절이 고용여부-근로조건 결정요소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

③ 근로자의 직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외부적-정신적으로 불쾌하고 열악하게 만들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

VI. 위자료 산정근거

NMR기기 담당조교 선발과 재임용에 실질적 권한 가지는 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했으므로 책임이 있다

① 신체적 접촉 그 횟수가 20~30회, 무형적 폭력, 원고의 거부후의 부당한 실질적 해임

② 교수가 조교를 상대로 실험실 연구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함

③ 원고의 책임문제 = 왜 적극적인 대항을 안했나 - 이것은 사실인정에서도 문제되나 위자료 액수 참작사유로 된다.

미국 고용기회평등위원회(EEOC) 규정

제 1604.11조 성희롱

[제1항] 성을 기준으로 괴롭히는 것은 시민권법 제 7장 제703조의 위반이다. 원하지 않는 성적인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인 행위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1)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나 거부가 그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결정의 근거로 이용된 경우

(2)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나 거부가 그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고용결정의 근거로 이용된 경우

(3)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개인 업무능력을 방해하거나,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업무환경을 만들 의도를 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 경우

[제2항] 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되느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기록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또 성적 접근의 성질과 그러한 행위가 일어난 맥락 등 상황의 전부를 살펴 보아야 한다. 특정 행위에 대한 합법성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체적 사실들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제3항] 시민권법 제 7장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고용주, 사원공급기관, 공동연수위원회 또는 노동기구 (이하 전체적으로 "고용자"로 칭함)는 각각의 행위와 대리인 및 감독적 피고용자의 행위에 고소된 성희롱의 구체적 행위가 고용자에 의해 승인되었거나 알고 있어야만 했던 것에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위원회는 개인의 행위가 감독의 권한이나 대리의 권한으로 행해진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별적으로 고용관계 및 개인이 행하는 일의 관련성을 조사한다.

[제4항] 동료 피고용자들 사이의 행위에 관해서는 고용자(혹은 그 대리인이나 감독적 피고용자)는 그 성희롱 행위를 알고 있거나 또는 알았어야만 하는 작업장소에서 일어난

경우, 즉각적이고도 상당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그 성희롱 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다.

[제5항] 고용자는 성희롱 행위를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만 하는 작업장소에서 이루어진 성희롱 행위에 있어서도 즉각적이고도 상당한 시정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비고용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조사함에 있어서 위원회는 고용자의 통제 범위와 고용자가 그러한 비고용자의 행위에 대해서 지게될 다른 법적 책임을 고려한다.

[제6항] 성희롱의 근절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예방이다. 고용자는 성희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한 비난을 표시하거나 적절한 제재조치를 강구하고, 피고용자들로 하여금 시민권법 제 7장에 따라 성희롱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의 존재와 어떻게 제기되는지를 고지시키며 모든 이해관계인을 의식시키는 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제7항] 기타 관련 실무: 고용기회나 대가가 고용자의 성적인 접근 혹은 성적접촉의 요구에 대한 수용으로 인하여 -주어진 경우 그 고용자는 고용기회나 대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거부당한 다른 사람을 불법적으로 성차별하였다는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Title VII, Pub. L. 88-352, 78 Stat. 253 142 U.S.C. 2000e et seq)

[45 FR 74677, Nov. 10.1980]

당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세요

당신에게 성폭력이 일어난다면?

- 1) 성폭력을 당했을 때 정확하고 단호하게 불쾌하다는 의사를 즉각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성적인 농담이나 행동을 할 경우 그 즉시 문제제기해야 한다.
 - 상대방의 행동이 어떠했고, 그것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명히 말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구체적으로 지적해줘야 한다.
 - 이런 대응은 갑작스럽게 하기 힘들므로 평소에 자기 주장을 확실하게 하는 습관을 기른다.

- 2) 데이트 상대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남자는 피하도록 한다. 데이트 중 성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 당신을 평등하게 대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모욕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마음대로 하는 사람.
 - 당신의 행동과 생활(교우관계, 웃차림등)을 지배하려는 사람.
 - 여성일반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 이유없이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한 사람.
 -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공격적인 사람.
 - 술이나 약물을 지나치게 복용하거나, 그랬을 때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

- 3) 데이트하는 도중에는 다음 사실들에 주의한다.

- 당신의 성에 대한 가치관, 행동범위의 한계에 대해 분명한 마음의 결정을 하고 있는가?
 - 당신의 성적 의도에 대해 상대와 가능한 일찍 대화를 하고, 그 후에도 상대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다.
 - ‘예’와 ‘아니오’가 뒤섞인 태도를 보이지 말고, 표현을 분명히 한다. 당신이 침묵하거나 약하게 항의하면 상대는 동의로 오해하거나 당신의 의견을 무시할 수도 있다.
 - 상대를 잘 모르거나 친밀한 관계가 될 마음이 없을 때는 그의 집에 가거나 그를 당신의 집에 초대하지 않는다.
 -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모르는 곳에 가서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
 - 모든 데이트 비용을 상대가 지불해서 성관계를 거절하기 힘든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도와주시는 분들

지은 영오 융국 시하 순호 흐점 성희 현창 병권

한국의 문화 유산은 그 자체로 역사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특히 고려시대에 걸친 고려궁과 고려성은 당시的政治·문화·사회 구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외에도 신라시대의 청동기·석조·도자기 등은 고대 한국 문화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다. 한편으로는 고려시대에 걸친 고려궁과 고려성은 당시的政治·문화·사회 구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이다. 이 외에도 신라시대의 청동기·석조·도자기 등은 고대 한국 문화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을 잘 드러낸다.

성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자료집 편집

군악교-국악 그룹